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기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2
----------	-----

발의년월일 : 2018 년 8월 16일

발 의 자 : 최기찬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정환, 이광성, 장상기,
문장길, 김경영, 오현정,
정진술, 이동현, 송정빈,
강대호, 김화숙, 박기재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의료관광업(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은 세계 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지속적이며 급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임
- 현재 서울시는 매년 「서울의료관광 활성화 계획(안)」을 통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의 근거가 없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및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그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 가. 의료관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 나. 의료관광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5조~9조)
- 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안 제10조~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외국인환자를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

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를 유능한 의료진과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4.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과 기본계획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체육국장과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1. 의료관광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2. 의료관광 관련 홍보·마케팅 전문가
3. 국내 의료에의 영향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민원 야기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상품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위원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에 관한 사업
2.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운영 및 공항 픽업 서비스 운영 등 외국인 환

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

3. 서울 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운영 등 의료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
4.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사업
6. 국내외 의료관광 사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7. 의료서비스 국제인증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0조(의료관광 홍보·마케팅 등) ① 시장은 의료관광의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서울시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 할 수 있다.

제11조(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운영)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홍보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보에 적합한 인사를 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에 출석,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 제4호·제5호·제7호, 제11조(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운영)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동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450,000천원 (연평균 49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450,000천원(연평균 49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 물가상승률 미반영
 -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제9조 제1호),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운영 및 외국인 환자 편의지원(제9조 제2호), 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운영(제9조 제3호), 국내외 의료관광 사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제9조 제6호)은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제9조 제8호)은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 규정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의료관광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운영(제5조)사업은 위촉직 위원 13명 대상 연4회 회의 개최 (정기회의 2회, 임시회의 2회) 기준 비용추계
 -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제9조 제4호) 사업은 3단계(기본, 심화, 역량) 교육과정 기준으로 각 단계별 100명 교육 실시에 대한 비용추계
 -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사업(제9조 제5호)은 공모전 연1회 추진 및 수상작 10건 대상 홍보·마케팅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
 - 의료서비스 국제인증에 관한 사업(제9조 제7호)은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증(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컨설팅 지원기관(1개) 위탁비용 비용추계

-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운영(제11조) 사업은 위촉식 연1회 추진 및 홍보대사 활동 실비 연5회 기준 비용추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450,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제5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전문인력 양성(제9조 제4호)	145,000	145,000	145,000	145,000	145,000	725,000
	의료관광 상품개발(제9조 제5호)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의료서비스 국제인증(제9조 제7호)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의료관광 홍보대사 운영(제11조)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소계(b)	490,000	490,000	490,000	490,000	490,000	2,450,000
□ 총 비용(b-a)		490,000	490,000	490,000	490,000	490,000	2,450,000

1) 협의회 설치 및 운영 ≙ 50,000천원

- 총비용 = 10,000천원 × 5(년) = 50,000천원

- 연간 회의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 13명(위촉직) × 4회 = 7,800천원
- 자료제작, 인쇄, 사무용품, 교통실비 등 : 550천원 × 4회 = 2,2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협의회 설치 및 운영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협의회 위원 15명 중 위촉직 13명 회의수당 및 기타 회의비용 계산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참조

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 725,000천원

- 총비용 = 145,000천원 × 5(년) = 725,000천원

- 기본과정(언어) : 200천원 × 100명 × 2개월 = 40,000천원

- 심화과정(자격취득반) : 350천원 × 100명 × 2개월 = 70,000천원
- 역량강화(자격증 취득자) : 150천원 × 100명 × 1개월 = 15,000천원
- 만족도조사 : 20,000천원 × (1회) = 2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전문인력 양성	145,000	145,000	145,000	145,000	145,000	725,000

※ 서울관광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아카데미 과정 예산 등 참조

※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산업인력공단) 취득 관련 기준

3) 의료관광 상품개발 ≍ 1,500,000천원

- 총비용 = 300,000천원 × 5(년) = 1,500,000천원

- 의료관광 상품 공모전 추진: 100,000천원(행사비) × 1회 = 100,000천원
- 수상작 홍보·마케팅 지원 : 20,000천원 × 10건 = 2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의료관광 상품개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 서울산업진흥원(SBA) '2018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우수사회적경제기업' 등 사업비 참조

4) 의료서비스 국제인증 ≍ 100,000천원

- 총비용 = 20,000천원 × 5(년) = 100,000천원

-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증 컨설팅 위탁 : 20,000천원 × 1개 기관 = 2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의료서비스 국제인증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대구광역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증 컨설팅(대구의료관광진흥원) 비용 참조

5) 의료관광 홍보대사 운영 ≍ 75,000천원

- 총비용 = 15,000천원 × 5(년) = 75,000천원

- 홍보대사 위촉식 : 5,000천원(행사비) × 1회 = 5,000천원
- 홍보대사 활동 실비지급 : 2,000천원(1인 평균) × 5(회) = 1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의료관광 홍보대사 운영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소통담당관 '2017년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계획, 참조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이은영

분석관(주무관) 장호진

☎ 02-2180-7934

e-mail : hwarang7@seoul.go.kr